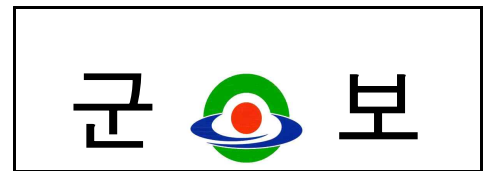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8호 2022. 12. 8.(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525호)
-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526호)
-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27호)
-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28호)
-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29호)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3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25호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하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미취학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회원 : 취학 전 아동과 함께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2. 시설회원 :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그 밖의 협약 기관

② 회원의 자격은 제8조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회비의 납부 및 환급)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

불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매년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비의 면제 등)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6.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대여자료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도서 등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군수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비영리법인·단체명 및 개인)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과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예천군 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5조(위탁금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위탁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조례나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나.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난감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 기능과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등의 기능 수행

다.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제 운영과 회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9조)

-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 회원의 의무와 이용제한 사유를 규정함.
- 연회비의 납부 및 환급 사유, 면제 조건에 대해 규정함.

라.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6조)

- 군수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위탁계약은 5년 이내이며, 재위탁은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만 가능함.
- 위탁 해지사유와 위탁금 환수에 대해 규정함.
- 장난감도서관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 있을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26호

예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예천군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급식 지원 방법)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 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급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 지원 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8호의 대상자는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 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 급식 지원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생·안전 교육 등)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반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제4조(아동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른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보호자의 아동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아·반장, 담당공무원 등 추천)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부식 배달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예천군수가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만의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예천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아동 급식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다. 급식 지원 신청 절차, 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라. 예천군 아동 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마.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함.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27호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장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예천군 답레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레품 품목 선정

2. 답레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레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농업·유통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은 이 조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레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레품 및 답레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예천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예천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물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예천군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예천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제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
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별표에 따른 평가항목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
하는 답례품비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장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기금분임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공무원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예천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및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4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용 및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용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계좌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기준

1.농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사업목적 부합성 (15점)	○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 - 관할구역 안에 답례품 생산기반(농지, 축사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등) (3점) - 답례품 공급업체의 생산자(경영주)가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 여부 확인 (3점) - 답례품 공급업체의 사업 및 사업계획이 답례품 공급사업에 부합되는지 확인 (4점) - 생산자가 관할구역 안에서 답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 (5점)
2. 공급업체의 운영 역량(20점)	○ 공급업체의 농산물 생산 및 공급 실적을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답례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생산량 및 공급량 등으로 평가 (10점) ○ 생산자(경영주)의 최근 3년간 자격취득 및 교육 이수실적을 평가한다. - 사업자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생산, 유통,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 (10점)
3. 지역의 대표상품 연계성(30점)	○ 농산물의 지명도, 인지도, 전통성 등의 요소를 토대로 지역대표 지역특산품인지를 평가한다. (30점)
4. 마케팅 및 유통관 리(25점)	○ 해당 제품의 판매처 등을 토대로 생산자의 마케팅 역량 및 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 대형유통업체, 지자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입점·판매 등 (10점) ○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 소비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4점) ○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교환 및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7점)

	○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점)
5. 시설운영 및 품질의 전문성(10점)	○ 해당 제품 생산 시설 장비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 -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4점)
	○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측정자료(전문기관 발행자료) - 당도, 성분, 기능성 등 (2점)
	○ 잔류농약검사, HACCP 등 제품의 안전 확보의 적절성 (4점)
6. 가점(5점)	○ 국가(친환경인증, 지리적 표시 등록, GAP농산물, 저탄소인증 등)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인증, 지자체 공동브랜드 사용 (2점) ○ 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 (3점)

2. 농수산 가공식품(제조업)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사업목적 부합성 (10점)	○ 답례품 공급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 -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의 사업 및 사업계획이 답례품 공급 사업에 부합 여부 (2점) - 관할구역 안에 답례품 생산·제조 시설기반 보유 여부(사업자 등록증 등) (3점) - 답례품 공급업체의 생산자·대표자가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 여부(가족관계등록부) (2점) - 답례품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한 생산품에 해당 여부 (3점)
2. 사업체의 운영 역량 (15점)	○ 사업자(경영주)의 최근 3년간 교육 참가실적을 평가한다. - 사업자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회계, 경영, 유통, 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 (2점)
	○ 답례품의 연중 및 안정적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생산량 및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 (6점)
	○ 제조업체일 경우 최근 3년간의 경영 및 재무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등) (7점)
3.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30점)	○ 답례품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의 사용(규모, 비율과 조달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 제조업체가 답례품 생산을 위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된 원재료(원물) 사용에 대해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구분	배점	평가 사항
	a	30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100퍼센트 이상을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b	20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c	15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d	5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50퍼센트 이상이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4. 가공공장 설비·장비(15점)	○ 공장입지에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공장입지에 오염원 유·무 및 관리 정도를 평가 (5점)		
	○ 답레품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관리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 작업장의 용도별(원료처리, 제조가공, 포장 등) 분리 유·무 및 교차오염 방지 관리 정도를 평가 (3점)		
	○ 답레품 제조·가공을 위한 적정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가공품 생산 기계설비, 식품소재 반가공 시설·장비 등 (7점)		
5. 제조 공정 및 품질·위생관리(15점)	○ 답레품의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 등이 수립 및 운영에 대해 평가한다. -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공정별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4점)		
	○ 답레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전문인력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고 주기적으로 품질검사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장구(위생복·위생모·마스크 등) 착용 및 오·폐수의 처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위생장구류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평가 (3점) - 적정규모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 및 배출하고 있는지를 평가 (3점)
6. 마케팅 및 유통관리(15점)	○ 해당 제품의 판매처 등을 토대로 생산자의 마케팅 역량 및 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 대형유통업체, 지자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입점·판매 등 (7점)
	○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 소비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3점)
	○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교환 및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지를 평가 (3점)
	○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점)
7. 가점(5점)	○ 국가(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인증, 전통주인증, 지리적 표시, GAP, HACCP 등) 및 지방자치단체 인증(3점) ○ 생산농가-소재업체-제품업체간 공동협력 - 상생협력 MOU 등 협력체계 구축, 품질향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전문교육 참여도 등 (2점)

◇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실시하여 예천군의 인구감소 및 지방 재정난을 보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5조)

-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 규정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 답례품비 지급 및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다.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기금의 설치 및 관리와 운용, 사용목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2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28호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탁운영·관리) ①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문화회관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밀히 검토 후,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제15조의2(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문화예술
관련 전문성과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해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의3(위탁 기간) ①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계약할 수 있다.

② 연장 계약 시,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문화회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운영경비) ① 군수는 문화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수탁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6(위탁계약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4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시설물의 일체를 예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의7(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 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8(손해배상) 문화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일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따르고”를 “따르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유일한 공공 공연장으로서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 인력 충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관련 전문단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천군 문화회관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대상자를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밀히 검토 후,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나.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의무,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 제15조의4)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함.
-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문화회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 운영경비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5, 제15조의6)

- 문화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관리 소홀 및 시설 임의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만료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라.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7, 제15조의8)

- 군수는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일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29호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나목 중 “등록된 장애인”을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사람, 삼강주막 및 삼강나루캠핑장 이용자”로 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카. 단체 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제12조제1호 중 “모빌홈”을 “펜션”으로 한다.

제1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③ 감면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감면대상자를 대신하여 제2항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문화전시관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관람료 (개인)	비 고
소 인 / 청소년	2,000	만 3세 이상 만 20세 미만
대 인	3,000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경로 우대	2,000	만 65세 이상

• 관람료 감면

(단위 : %)

감면대상	감면율	비고
만 2세 이하,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삼강리 주민 등	100	
예천군민, 삼강주막 및 삼강나루캠핑장 이용자	50	
단체(10인 이상)	20	

[별표 2]

캠핑장 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이용시간	성 수 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 일	
오토캠핑	카라반	1면/1일	50,000	50,000	40,000	감면 제외
	테 크	1면/1일	40,000	40,000	30,000	
펜 셴		1면/1일	150,000	120,000	100,000	
<비 고>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시작일 기준) 가. 평 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2. 이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당일(09:00~18:00) 3. 퇴실시간 초과 시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추가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산정) 가. 오토캠핑 : 시간당 2,000원 추가, 3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나. 펜 셴 : 시간당 10,000원 추가, 3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이용료 감면

(단위 : %)

감 면 대 상	감 면 율	비 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관내 초·중·고 수련활동참여자, 다자녀가정, 예천군민 등	30	

◇개정이유

가. 강문화전시관 관람료에 경로 우대 요금을 신설하고 관람료 전액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강문화전시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강문화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나.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강나루 캠핑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강문화전시관 관람료 전액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7조제1항제1호)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

- 단체 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나. 캠핑장 시설(오토캠핑장 제외)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15조제1항)

- 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

다. 만 65세 이상 강문화전시관 관람료 감면(안 별표 1)

- 3,000원 → 2,000원

라. 잘못 표기된 명칭을 쉬운 말로 수정(안 제12조제1호, 별표 2)

- 모빌홈 → 펜션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30호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0㎡당 1대(시설면적/500㎡)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2.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개정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예천군 주차장 조례」 별표 11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예천군 부설주차장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안 별표 11)